연수원관리지침

제정 2016. 1. 1 개정 2020.12.30 시행 2020.12.31 개정 2024.11.25. 시행 2024.12. 1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고정자산 운영관리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kobaco연수원(이하 "연수원"이라 한다)시설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연수원시설"이란 연수원 내의 건물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.
 - 2. "연수원시설사용"이란 연수원시설을 이 지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 - 3. "사용자"란 연수원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연수원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연수원의 구성과 복무, 시설의 사용, 유지·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과 달리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
- 제4조(조직과 업무) ①연수원의 구성원은 직원과 용역 및 위탁직원으로 한다.
 - ②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시설 및 서비스 제공
 - 2. 교육·연수진행 지원
 - 3. 시설안내와 판매촉진
 - 4. 식당, 매점, 수영장 운영
 - 5.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
 - 6. 행정지원 등 그 밖에 연수원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
 - ③부문관리자는 업무량의 일시적 증가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일급은 수행할 업무의 질과 양, 현지의 노임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.
- 제5조(복무) ①연수원은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한다.
 - ②연수원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몰입도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 - 1. 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, 일과시간 외의 근무, 당직근무
 - 2. 공휴일 등 휴일 또는 휴가 중의 근무
 - ③제2항의 경우 해당 근무자의 출·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대체 휴가를 줄 수 있다.

제2장 연수원 관리

제1절 통칙

- 제6조(사업계획) 부문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수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.
 - 1. 연수원시설의 활용 및 사용자 수급에 관한 사항
 - 2. 연간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
 - 3. 연수원시설 사용료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
 - 4. 연수원시설 검사계획 등 연수원시설 관리 및 유지·보수에 관한 사항
 - 5. 리스크관리계획
 - 6. 에너지관리계획
 - 7. 그 밖에 연수원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
- 제7조(관리기준) ①부문관리자는 각종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 연수원관리기준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연수원 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.
 - 1. 회원제 등 연수원 사용 단체에 관한 사항
 - 2. 연수원시설별 사용인원 기준
 - 3. 연수원시설 사용료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

- 4. 연수원시설 사용가능 시간 등 연수원시설 출입에 관한 사항
- 5. 물품(우편물 포함) 반·출입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
- 6. 냉·난방, 온수, 배전 등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
- 7. 승강기 운영에 관한 사항
- 8. 사인물(간판, 명판, 광고물 등) 설치 등에 관한 사항
- 9. 환경정리, 위생시설 및 방역시설에 관한 사항
- 10. 화기단속 및 방재관리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연수원시설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사항
- 제8조(연수원시설 사용규칙) ①부문관리자는 연수원시설 사용자를 대 상으로 연수원시설 사용규칙을 정하여 이를 시행한다.
 - ②제1항의 연수원시설 사용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야 한다.
 - 1. 제7조 제2항 제2호,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
 - 2.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
 - 3. 연수원시설 멸실·훼손 시 책임에 관한 사항
 - 4. 퇴실 시 환경정리 등에 관한 사항
 - 5. 화재 등 위험 발생 시 대피 등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연수원시설 사용에 따라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9조(리스크관리계획 등) ①부문관리자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, 전염병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부문관리자는 실제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시설 멸실·훼손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한다.
- ③그 밖에 리스크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리스크관리매뉴얼로 따로 정한다.
- 제10조(에너지관리계획) ①부문관리자는 에너지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월간.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부문관리자는 제1항과 별도로 하절기, 동절기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③에너지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연수원관리기준에서 정한다.
- 제10조의2(안전관리자선임)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지 침 제12조를 준용한다.

제2절 연수원시설 사용

- 제11조(시설사용대상) ①연수원시설의 사용대상은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.
 - ②공사 유관단체 및 공익단체 등에 한해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.
 - ③제2항에 따른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연수원관리기준으로 따로 정한다.

- 제12조(시설사용목적) 연수원시설은 교육(연수), 훈련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제13조(시설의 사용범위 등) ①사용자가 사용가능한 연수원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시설 보수 등 제반사정에 따라 그범위를 일부 제한 할 수 있다.
 - 1. 강당, 강의실, 세미나실, 분임토의실 등 교육시설
 - 2. 숙박시설
 - 3. 운동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
 - 4. 식당. 연회장 등 내부 부대시설
 - 5. 산책로, 캠프화이어장 등 외부 부대시설
 - 6. 그 밖의 시설 단, 이 경우 연수원의 운영·관리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한다.
 - ②수영장은 7월·8월에 한해 운영하며, 구체적인 운영일시는 날씨 등을 고려하여 부문관리자가 정한다.
 -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의 사용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시에 사용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서 접수 후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범위를 일부 제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라도 지체 없이 사용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 - ④전항 단서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, 단위관리자는 사용제한으로 신청인의 사용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설사용계약의 해제 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사용인원) 시설별 사용인원은 연수원관리기준으로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시설사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시설사용신청)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의 연수 원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1.2 5>
 -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 예약이 된 것으로 본다.
 - ③신청서를 접수한 단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
 - 1. 시설사용목적의 타당성
 - 2. 시설사용대상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
 - 3. 시설사용 인원의 수용가능성
 - 4. 시설 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사용목적 달성 가능여부
 - 5. 기존 예약과 중복 등 사용 가능 여부
 - ④단위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통지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사용규칙, 사용료, 연체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 여 같이 고지하여야 한다.
 -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구두에 의한 신청으로 대신할 수 있다.
 - 1.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- 2. 공사의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
 - 3. 사회공헌 등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시설 등을 지원하는 경

우

- 제16조(사용계획서) 단위관리자는 전조에 따른 승인 확정 후 시설 사용 전까지 사용자로부터 연수원시설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연수원시설사용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.
- 제17조(사용료) ①연수원 시설의 사용료는 연수원관리기준으로 따로 정한다.
 - ②사용료는 재료비, 용역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18조(사용료의 감면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 - 1. 회원제 단체
 - 2. 주말이용단체, 장기이용단체 및 실적누적단체
 - 3. 공사의 업무 목적 또는 공사의 직원의 사용하는 경우
 - 4. 사회공헌활동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- 5. 그 밖에 사장 또는 총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수원관리기준으로 따로 정한다.
- 제19조(예약보증금) ①단위관리자는 시설 사용에 대한 승인이 확정 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%를 예약보증금으로 수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8조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예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- ②단위관리자는 신청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예정일 당일 및 그 이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.
 - 1. 사용예정일(0시 기준) 48시간 전까지 취소한 경우: 100%
 - 2. 사용예정일 48시간 전부터 당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50%
 - 3. 태풍. 폭설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: 100%
- 제20조(사용료 수납) ①단위관리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료 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, 사용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 잔액을 징수하여야 한다.
 - ②사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납한다.
 - ③사용료 납부기한의 연장과 연체관리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관리지침 제25조 제1항, 제3항, 제4항을 준용한다.
- 제21조(원상복구와 손해배상) ①단위관리자는 사용이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시설 등의 멸실 또는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 등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급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시설 등의 멸실 또는 훼손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하여야 한다.
 - ④제3항의 경우 부문관리자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공사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에 상당한 금액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.

제3절 연수원시설 점검과 보수

- 제22조(연수원시설점검) ①연수원시설의 점검에 관하여 시설관리지침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.
 - ②제1항의 점검과 별도로 단위관리자는 사용이 종료된 연수원시설에 대하여 종료 즉시 점검하여 시설의 멸실·훼손여부 또는 물품의분실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③단위관리자는 제1항·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특이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급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시설의 보수) ①부문관리자는 연수원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보수 공사를 시행하며, 그 진행과정을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한다.
 - ②단위관리자는 전조 제1항·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물의 멸실· 훼손이 발생하거나 건물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과는 별도로 시설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부문관리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부문관리자는 지체 없이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보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인 전에 시설보수에 착수할 수 있다.
 - 1.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경우

- 2. 시설보수 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
- ④전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원형이나 기능에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24조(공사 계약 등) 연수원시설 보수 및 유지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영지침 제29조부터 제64조까지(제55조를 제외한다) 및 시설관리지침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.

제3장 위탁운영·관리

- 제25조(위탁운영) 연수원 시설 중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위탁 운영할수 있다.
 - 1. 매점
 - 2. 식당
 - 3. 수영장
- 제26조(위탁운영계약 등) ①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, 계약상대방과 합의하여 정한다.
 - ②위탁운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자산운영지침 제5장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12.30.>
 - ③위탁수수료 등은 주변시세, 임대 시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.
 - ④그 밖에 위탁수수료의 증감 및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관

리지침 제6조 제4항,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. <개정 202 0.12.30.>

- 제27조(위탁운영의 관리) ①부문관리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관하여 월 1회 이상 운영현황을 감독하여야 한다.
 - ②단위관리자는 위탁운영시설의 위생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수 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제28조(위탁관리) ①총괄관리자는 연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 다만, 승강기의 유지·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승강기안전관리법」 제39조에 따라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등록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30.>
 -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별표 1의 관리항목에 따른 업무에 한한다.
 - ③부문관리자는 용역회사의 위탁업무 집행에 관하여 관리·감독하며, 용역회사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위탁 업무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부문관리자는 시설 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단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 등 시설유지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는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⑤시설관리 위탁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위탁 할 업무 전체를 하나의 입찰에 부

친다. 다만, 승강기 유지·관리업무 등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경우와 같이 분할하여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4장 재물조사와 기록관리 등

- 제29조(연수원시설의 재물조사) ①부문관리자는 연수원시설 및 기타자산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자산현황 불일치 등 자산목록과 실제 현황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총괄관리자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부문관리자는 사장의 지휘를 받아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부문관리자는 유휴자산이나 불용결정이 필요한 자산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처분계획, 대체자산의 구매계획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30조(연수원시설의 변경) ①부문관리자는 연수원시설 관리를 위해 연수원시설 또는 시설 내 기타자산을 전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한다.
 -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총괄관리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제31조(기타자산의 손망실) 연수원시설 또는 시설 내 기타자산이 손망실된 경우 규정 제21조 및 자산운영지침 제67조에 따라 보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30.>
- 제32조(기록관리) ①부문관리자는 연수원운영·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단위관리자는 연수원 시설 등 자산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발생순서순으로 기록한다.
 - ③단위관리자는 시설보수 등 연수원을 운영·관리에 관한 계약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12.30.>

이 지침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4.11.25.>

이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세부분야별 관리항목

세부계획	관리 항목		
소방설비	소화설비, 소화용수설비, 소화활동설비, 경보설비, 피난설비, 배연설비		
기계설비	냉·난방설비, 열교환기설비, 공조설비, 위생설비, 급배기설비, 펌프시설, 정화조설비, 물탱크설비, 가스설비, 자동제어설비, 기타 기 계 설비		
전기설비	수변전설비, 조명설비, UPS설비, 자동제어설비, 동력설비, 피뢰침- 비, 비상발전기설비, 승강기설비, 기타 전기설비		
방송통신설비	방송설비, CATV설비, 무선통신설비, CARD Key설비, 인터넷 설비, 음향 및 영상설비 등		
건축설비	구조설비, 청소설비, 수장설비, 방수설비, 내부칸막이 설비, 출입문		
환경·미화	바닥청소, 화장실청소, 건물내부청소, 카페트청소, 외부유리 및 외 청소, 승강기청소, 주차장청소, 로비청소, 폐기물 분리배출 등		
보안관리	건물내•외의 시설보호, 외부인 출입 통제, 물품의 반•출입 통제, 건물출입문 시건장치 관리, 순찰 및 점검, 차량관리, 안내 등		
조경관리	시비, 방제, 제초, 겨울철 잠복소설치, 전지작업, 수목소독, 수목보식 등		
주차장관리	관리 차량출입통제설비, 주차요금 정산설비, 차량 유도표시 및 표식 등		
그 밖의 분야	위험물 저장취급시설, 하론가스 등		

시설사용신청서

단 체 명				
사업자등록번호				
또는				
주민등록번호				
주 소				
담 당 자	성 명	연락처		
연수명	ex) 창립기념일 워크숍			
연수인원		명 (대인 :) (소인 :)	
사용기간	2024년	월 일 요일 시 입소 월 일 요일 시 퇴소 (박 일	식)	
연수시설 사용계획	강 당	연회장 레크레이션실		
	강의실	잔 디 구 장		
	숙 소			
사용료		=17/		
지불방법		현금() 법인카드() 세금계산서()		
세금계산서 수신용	용 메일주소			
귀 원의 이용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.				
kobacó	연수원	2024년 월 일 신청자 소속: 주소: 성명:	(인)	

※ 객실 입실은 오후 14시, 퇴실은 오전 09시30분입니다. ※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E-mail 주소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.